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25

발의연월일: 2025. 3. 7.

발 의 자:전진숙・임호선・안호영

강선우・남인순・김 윤

이수진 · 김선민 · 이용우

서영석 • 박희승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일부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상금과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,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및 지원금은 제외하지 않고 있음.

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, 국가의 폭력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은 부당한 희생에 따른 것이 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

제4조제5항 신설 및 제6조의3제1항제4호).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안정적인 생활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정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이전소득. 다만, 다음 각 목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
 - 가.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 상금 및 지원금
 - 나. 「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원금
 - 다.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」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
 - 라. 그 밖에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급여의 기준 등) ① ~ ④	제4조(급여의 기준 등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
	따른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
	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
	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
	우 및 안정적인 생활 보장의
	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
	종류별로 국가보훈부장관 및
	행정안전부장관 등 소관 중앙
	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
	<u>정하여야 한다.</u>
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 ①	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 ①
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	
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	
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	
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	
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	
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	
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	
·질병·양육 등 가구 특성에	
따른 지출요인, 근로를 유인하	
기 위한 요인, 그 밖에 추가적	

- 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이전소득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이전소득. 다만, 다음 각 목 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
 - 가. 「5・18민주화운동 관련 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 나. 「여수・순천 10・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원금
 - 다. 「제주4・3사건 진상규명
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
 한 특별법」에 따른 보상
 금 및 지원금
 - 라. 그 밖에 국가에 의한 폭 력이나 기본권 제한에 따 른 보상금 및 지원금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생 략)